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4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이원택 · 이언주 · 문대림
송옥주 · 서삼석 · 김한규
윤후덕 · 주철현 · 임미애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결성, 투자 및 회수 구조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농식품산업의 GDP 비중은 3% 수준임에도 농식품 분야 벤처투자 비중은 1.6%에 불과하여 산업 규모 대비 민간 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K-푸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투자정보 관리, 투자관리기관의 책무 규정,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서 미흡하여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음.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등 초기 기업 투자 방식 도입 근거가 부재하고,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기반 부족,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기준 미비, 공무수탁사인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부재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벌칙·과태료 수준이 유사 입법례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식품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정의 규정 정비,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 마련, 자펀드 관리체계 강화, 세컨더리펀드 기준 정비, 벌칙 및 과태료 상향 등 전반적인 제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 나. 현행 정의 규정을 일반적인 입법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 SAFE·CN 등 다양한 신규 투자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다. 국가의 책무 외에 투자관리전문기관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 라. 농식품산업 투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 마. 농식품 분야 특성을 고려한 투자 촉진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4

조의4).

- 바.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투자의무 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사.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합의 공시’를 ‘조합 서류의 열람’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함(안 제22조).
- 아. 자펀드의 투자실적 및 결산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 자. 행정처분 및 등록취소 사유를 정비하고, 보고·검사에 대한 협조 의무를 강화함(안 제28조 및 제30조).
- 차. 공무수탁사인(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임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3).
- 카. 농식품투자조합뿐 아니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투자자 및 피투자경영체 보호를 강화함(안 제32조).
- 타. 별칙 수준을 유사 입법례 수준으로 상향하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 함(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안 제33조).
- 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신설함 (안 제33조의2).
- 하. 과태료 수준을 유사 입법례 수준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정비 함(안 제34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조성하여”를 “조성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진흥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나.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가목 중 “전환사채”를 “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 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 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농림수산식품경영체가 개발하거나 생산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정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다.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를 말한다)

- 1)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농림수산식품투자”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농림수산식품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국가의 책무)”를 “(국가의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은 농식품경영체가 성장하도록 농림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4. 제5조에 따라 설립하거나 지정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제4조의3(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농림수산식품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농림수산식품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농림수산식품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 산업 육성 및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국내외 농림수산식품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3. 농식품경영체 및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지원

4. 농식품분야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의 제

공

5. 농림수산식품투자 협의체 결성과 운영 지원

6. 농림수산식품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7. 농림수산식품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8.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을 위한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교류 지원

9.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5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업무를 영위한다”를 “사업을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수행”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제2항과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출자

3. 농식품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6.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협력사업 지원
 7.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8. 농림수산식품투자 성과의 관리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
 9.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기금관리주체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출자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농식품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모농식품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80조,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 제2호 ·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86조, 제218조, 제219조,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1조까지, 제244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은 제1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필요하면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고, 금융감독원장”을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에는 제4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제4항 후단 중 “조치내역을”을 “조치결과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 두고”를 “갖추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7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5.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비밀누설금지) 제3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
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중 “농식품투자조합이”를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농식품투자조
합이”로, “농식품투자조합의”를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농식품투자조
합의”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 중 “1년”을 “5년”으로,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1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

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u></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u>조성하여</u>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p>	<p><u>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u></p> <p>제1조(목적) ----- ----- ----- ----- <u>조성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진흥 및 -----.</u></p> <p>제2조(정의) ----- -----.</p> <p>1. <u>“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u></p> <p>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u></p> <p>나.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u></p> <p>다.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u></p>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
한다.

<신 설>

따른 식품산업

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2.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
체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
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다.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
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
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
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를 말한다)

1)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 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 나.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 다. (생략)

<신설>

<신설>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

가. -----

----- 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현행과 같음)

라. 투자금액의 상환 만기일

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 인수 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 전환계약의 체결

<신 설>

바. 농림수산식품경영체가 개발하거나 생산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정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신 설>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신 설>

4. “농림수산식품투자”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농림수산식품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3.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
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
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
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
한다)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
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
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
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
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
무에 종사하는 자

제4조(국가의 책무) (생 략)

<신 설>

<신 설>

제4조 (국가의 책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5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
기관과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
자조합 등은 농식품경영체가 성
장하도록 농림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
여야 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은 농림수산식품투자 활성화
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
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
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4. 제5조에 따라 설립하거나 지정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신 설>

제4조의3(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농림수산식품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용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농림수산식품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농림수산식품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1. 농림수산식품 산업 육성 및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국내외 농림수산식품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3. 농식품경영체 및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지원
4. 농식품분야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농림수산식품투자 협의체 결성과 운영 지원
6. 농림수산식품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7. 농림수산식품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8.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을 위한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교류 지원
9.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을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 제5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 사업을 한다.

<p><u>1.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u></p> <p><u>2.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결성 및 운영</u></p>	<p><u>1.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u></p> <p><u>2. 제8조제1항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출자</u></p>
<p><u><신 설></u></p>	
<p><u>3. · 4. (생 략)</u></p>	
<p><u>5.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u></p>	<p><u>3. 농식품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u></p>
<p><u>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 · 운용</u></p>	<p><u>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u></p>
<p><u><삭 제></u></p>	
<p><u>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u></p>	<p><u>6.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협력사업 지원</u></p>
<p><u>8.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u></p>	<p><u>7.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기술 · 경영 혁신 지원</u></p> <p><u>8. 농림수산식품투자 성과의 관리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u></p>
<p><u><신 설></u></p>	
	<p><u>9.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기금관리주체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u></p>

<p><u><신 설></u></p> <p>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u>사업수행</u>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p> <p><u><신 설></u></p> <p>③ ~ ⑤ (생략)</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u>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① ~ ⑦ (생략)</p>	<p><u>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u></p> <p>② ----- <u>제1항 각 호의 사업</u>----- ----- ----- ----- -----.</p> <p>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u>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u>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출자할 수 있다.</p> <p>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p>⑦ ----- <u>제2항과 제4항 및 제5항</u> ----- ----- ----- -----.</p> <p>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p>
--	--

<신 설>

제19조(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및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농식품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공모농식품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80조,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86조, 제218조, 제219조,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1조까지, 제244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이 경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은 제1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10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③ -----

----- 필요한 경우에
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
----- 있으며, 금융감독원
의 원장-----
-----.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조치결과를 -----

<p><u>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u> <u>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u>조치내</u> <u>역을</u>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 -----.</p>
<p>제22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u>갖추어 두고</u>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2조(조합의 공시) ① ----- ----- ----- <u>갖추어</u> ----- -----.</p>
<p>1. ~ 3.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7조(보고 등) ① ~ ③ (생 략)</p>	<p>제27조(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27조의2(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p>

	<p><u>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u></p>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p>제28조(행정처분) ----- ----- ----- ----- ----- -----.</p>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p><u>7. 제2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p>
<u><신 설></u>	<p><u>8. 제27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u></p>
제30조(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	<p>제30조(등록의 취소) ① ----- ----- ----- ----- -----.</p>

<p>소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u></p> <p><u>·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u></p> <p><u>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u></p> <p><u>거짓으로 보고한 경우</u></p>
<p><u><신 설></u></p>	<p><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u></p> <p><u>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u></p> <p><u>취소를 할 때에는 「행정절차</u></p> <p><u>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을 하</u></p> <p><u>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31조의3(비밀누설금지) 제31조</u></p> <p><u>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u></p> <p><u>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u></p> <p><u>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u></p> <p><u>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u></p> <p><u>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3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p> <p>이 법에 따른 <u>농식품투자조합</u>이</p> <p>아닌 자는 <u>농식품투자조합</u>의 명</p> <p>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p> <p>용하지 못한다.</p>	<p>제3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p> <p>----- <u>투자관리전문기관</u></p> <p>또는 <u>농식품투자조합</u>이 -----</p> <p>----- <u>투자관리전문기관</u> 또</p> <p>는 <u>농식품투자조합</u>의 -----</p> <p>-----.</p>
<p>제33조(별 칙) 제14조제5항에 따른</p> <p>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u>1년</u> 이</p> <p>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p>	<p>제33조(별 칙) ① -----</p> <p>----- <u>5년</u> --</p> <p>----- <u>5천만원</u> -----</p>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

② 제31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
----- 1천
만원 -----
--.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p><u>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u> <u>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u> <u>한 자</u></p>
<u>2.</u> · <u>3.</u> (생략)	<u>3.</u> · <u>4.</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